교 육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

1. 관련 근거
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1.1.2.)
 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41(2021.1.2.)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(1.2)를 통해 그간 **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조정하여 연장(1.4. 0시~1.17. 24시)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**. 이에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새롭게 조정되어 시행되는 방역 조치사항*에 대해서는 **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이 불가하며, 강화된 조치만을 시행 할 수 있음.**
 * 홀덤펍, 파티룸, 실외 겨울스포츠시설, 백화점·대형마트리조트, 호텔, 게스트하우스, 농어촌민박 등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사적, 모임 5인 이상 금지, 종교시설

※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'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' 참고.

3.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돼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, 방역 지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[중수본공문]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
 2.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
 3.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 4.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 5.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 6.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 7.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 8.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 9.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 10.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 11. 사적 모임 금지 관련 FAQ. 끝.

교 육 부 장 관

수신자 각실과, 고등교육기관전체, 소속기관, 소속단체, 시도교육청

주무관 **김신혜** 보건사무관 **정희권** 학생건강정책과장 전결 2021. 1. 4. **조명연**

협조자

시행 학생건강정책과-22 (2021. 1. 4.) 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14동 교육부 (어진동) / www.moe.go.kr

전화번호 044-203-6814 팩스번호 044-203-6438 / shin8352@korea.kr / 비공개(5)